

정보권의 사회윤리적 기초*

홍순원 (협성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정보권의 이중적 함의
- III. 정보 자유와 정보 평등
- IV. 정보권과 사이버문화
- V. 정보권의 규범적 한계
- VI. 정보보호와 정보 윤리
- V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51.14>

* 본 연구는 2020년 협성대학교 교내 연구과제로 수행되었다(2020-0021).

• ABSTRACT •

The Social Ethical Basis of Information Rights

Prof. Hong, Soon Won(Hyups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thical way to overcome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and equality in the realm of information right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it must be asserted to the extent that the rights to know do not infringe on the rights to be unknown. In this way, we can accomplish freedom through equality and realize the autonomy in controlling information. The rights to know and the rights to be unknown must be balanced so that the information rights may be completed. Information right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rights to control self-information. Cyberculture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fulfilling the requests to know, but it reveals limitations in protecting the rights to be unknown. The issue of information rights in cyberspace should start from establishing ethical consciousness rather than the enactment of laws. In the cyberculture, where autonomy is the sovereign norm, the autonomous control of information is at once rights and responsibility. If we want to sustain inform-society, we should establish the ethical consciousness before legal authority invades information rights. In cyber reality, he who has information becomes the subject, and he who has no information becomes the object. Therefore, an individual's autonomous sense of responsibility can be the only norm. When information rights are extended to control self-information, information rights and information responsibility can be harmonized.

Key words: Information Rights, Rights to Know, Rights to be Unknown, Freedom, Equality

I. 들어가는 말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Erich Fromm)에 따르면, 인간은 상호의존하려는 욕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려는 욕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¹⁾ 정보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인간 욕망의 양면성에 기인한다. 과거에는 개인정보가 제한되고 분산되었으며, 수집된 정보로의 접근이 어려웠고, 정보의 해독이 난해하였으나, 지금은 개인정보 수집, 처리, 활용에 있어서 현저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서 정보권은 정보의 수집, 유통에 대한 지식과 통제로 확대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이 다 같이 정보를 둘러싼 새로운 인권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이를 보장하려는 제도가 곧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이다.

정보공개는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보호는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알권리의 강화는 알려지지 않을 권리의 제한을 초래하고 알려지지 않을 권리의 강화는 알권리의 제한을 가져온다. 우리는 두 제도 사이의 갈등과 역기능으로부터 타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또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보 차단과 정보권 침해의 사례들을 제도와 규범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보권을 형성하는 두 권리의 영역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진리탐구와 제도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보사회의 필요 불가결의 요소이지만, 두 가치는 본질에 있어서 상충하고 있으므로 조화와 균형이 요구된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는 권력과 자본의 수단으로서 도구적 가치를 지니며 기관과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 활용하고 있다. 정보

1) Erich Fromm, *Man for Himself* (London: Routledge, 2003), 43.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대량으로, 신속,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처리, 활용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더 이상 소극적, 수동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권리, 곧 익명권(right to anonymity)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만을 정보의 프라이버시 영역과 소유권 영역에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면한 정보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보호제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권의 사회적, 제도적 확립과 그것을 위한 학제간 연구의 기초를 제시하기 위하여 정보권을 형성하는 알 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의 논리적 모순과 현실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정보사회의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위해서 먼저 두 권리의 충돌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립과 갈등이 사이버 문화를 통하여 증폭되는 원인을 밝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정보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학제간 연구의 이론적 기초와 제도적, 법률적 근거설정을 위해서는 제3세대 인권인 정보권의 이론적, 제도적 방향제시를 기본권으로부터 자유권과 평등권의 기초 위에서 분석할 것이다.

II. 정보권의 이중적 함의

정보화 사회란 공업 대신에 정보의 조작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식산업이나 정보산업이 국민총생산의 비율이나 산업종사자수 등에서 비중이 커지고, 일상생활에서 정보의 요구가 높아지며, 정보 미디어에 접하는 시간이 증대하고, 의사결정이나 적응행동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등, 일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극히 높은 사회다. 이와 함께 사회의 정보화는 순기능뿐 아니라 역기능을 수반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특히 알 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의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도 더욱 미묘하게 등장한다. 정보의 범람 때문에 확실한 선택능력이 부족한 일반인은 과잉 정보에 휩쓸려 판단력을 잃고 혼란에 빠지기 쉬울 뿐 아니라, 정보는 풍부한데 막상 필요한 정보는 찾을 수 없는 자료의 질적 빈곤상태가 생긴다.

한편으로는, 정보의 전산화로 정보의 흐름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들 삶에 중요하고도 필요불가결한 정보의 대부분을 국가가 보유하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하려는 정보공개요구의 요구가 커지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를 둘러싸고 정부나 민간기업, 그리고 언론미디어의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권 침해와 명예훼손은 인권 침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진다. 명예훼손은 가시적, 물질적 권리침해를 다루지만 정보권침해는 불가시적인 감정의 침해와 관련된다.²⁾

정보권은 알 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로 구분되는데, 알려지지 않을 권리인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인격의 존엄과 행복의 추구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개인 인격의 신성불가침을 전제로 한다. 이 권리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케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존립케 한다. 한편, 알 권리 또는 정보공개는 자기통치를 위한 정보나 생활 정보 뿐 아니라 정부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독점으로부터 민주사회를 보호한다. 알 권리는 전체를 위한 것이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공익에 양보해야 할 때도 있지만, 부당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자유민주사회의 이념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무정부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사생활이 말살되어 개인이 국가에 종속되는 전체주의에 빠지게 된다.³⁾

2) 이관기,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서울: 한국교육문화원, 1993), 34.

초기의 프라이버시권은 ‘홀로 있을 권리’(a light to be let alone)였는데, 그 가운데는 신체의 불가침성, 사사로운 일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이 포함되어 자유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편, 알 권리는 정부의 정보개시라는 작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자유권을 넘어서 헌법상의 생존권과 유사한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며, 공적 정보에 연계되어 참정권적 성격도 포함한다.⁴⁾ 최근에는 고도화된 정보유통을 통하여 사적 생활영역 자체가 의미를 잃었고, 프라이버시의 침해 범위가 모호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결함을 메우기 위해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를 통합하여 ‘자기정보통제권’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알 권리는 정보를 제공하게 만들고 공개하게 하므로 알려지지 않을 권리(프라이버시권)를 침해할 위험도 커지게 만든다. 그러나 보호되어야 할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백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넓은 의미에서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는 프라이버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보공개를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쪽에서는 항상 프라이버시권의 주장이 대립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적 생활이 아닌 모든 생활분야가 사생활이라고 주장한다면 또다시 공적 생활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공사의 구별이 상대화되고 사생활의 규정이 막연하므로 공사의 구별을 전제하지 않으면 사적인 영역의 보호도 불확실해진다.

‘자기정보통제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을 강조할 때,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권은 구별된다. 프라이버시란 개인에 대해 타인의 접근이 거부되는 사람의 존재상태의 기술적 개념이며, 프라이버시권은 이 상태에 평가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위한 개념이다⁵⁾.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정보통제

3) 위의 책, 36.

4) 김종현, 『정보보호 법제도와 보안정책』 (서울: 도서출판 홍릉, 2017), 19.

5) 이관기,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37.

권은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에 기초해서 중요한 정보를 통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개인이 접근, 통제하기 어려운 지식, 정보에 대한 주체성을 프라이버시 개념에 접목한 것이다. ‘자기정보통제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헌법에는 규정되지 않고 있지만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정보화 사회의 정보공개에 맞서서 우리들이 프라이버시권을 주장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그 정보가 단순히 평범한 개인 정보가 아니라 고도로 개인적 영역에 제한되는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그 정보가 정부가 수집하기 전부터 이미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부가 공적으로 제한하여 수집,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수집 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야 프라이버시권이 성립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공개되어야 하고, 그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선택되고 활용되는지를 개인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나 정보의 오류가 발견했을 경우, 삭제와 정정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다매체 환경이 구축되면서 한 곳에서 나오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다수가 수용하는 매스미디어와는 달리 모두가 정보를 주고받는 양방향 인터넷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법과 제도보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소통에 있어서 상호성, 익명성, 비동시성, 개방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권리충돌이 필연적이다. 이제 개인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는 주체에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추구하고 제한하는 주체이며,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교환하는 생산소비자(prosumer)가 되었다. 개인의 역할과 영향력이 강화된 만큼, 정보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의 정보권, 곧 알 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정보권을 의사표현

을 위한 선행조건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민주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정권과 연결시키고 있다.⁶⁾

정보권은 개체적 권리가 아니라 관계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의 두 영역인 나의 알 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는 충돌을 타인의 두 권리와 상호배타적이며,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원래 알 권리는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는 것이었는데, 점차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알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기본권 보장의 법리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⁷⁾

알 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와 의사형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말한다.⁸⁾ 알 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규범화한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두 제도는 일정한 정보의 공개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과연 그 대상정보에 포함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지의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보공개제도의 비공개사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 등에서 두 제도는 서로 관련성을 가지며, 서로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⁹⁾

자기정보 통제에 관점에서 보면,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반드시 알 권리

6) 이병남, 『미디어시민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68.

7) 이재진, 『미디어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27.

8) 안상운,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서울: 살림, 2017), 7.

9) 위의 책, 18.

나 정보공개제도와 대립하는 것만은 아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은 공적 기관이 보유하는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잘못되었는지 열람하고 정정하기 위해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프라이버시의 보호도 정보공개와 모순되기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III. 정보 자유와 정보 평등

정보권 안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대립한다.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정보로부터는 모두가 자유롭다. 알권리는 정보에 대한 권리로서 평등권적 성격을 가지며 알려지지 않을 권리는 정보로부터의 권리로서 자유권적 의미를 가진다. 자유권은 개인적 권리이며 평등권은 전체적 권리이다.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가 대립되는 것처럼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알 권리는 전체를 향한 개념 권리이기에 평등권의 영역이며, 알려지지 않을 권리는 개인을 향한 자유권에 속한다.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없는 것처럼 알 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는 현실적으로 분리될 수도, 통합될 수도 없다.

프랑스 혁명 이후 인권사상이 확립되면서 공동체적 평등권과 개인의 자유권의 대립이 시작되었다.¹⁰⁾ 자유는 개체들의 관점에서 본 삶의 원리이며, 평등은 그 개체들의 얽힘의 관계 집합이라는 전체의 관점에서 본 삶의 원리이다. 자유를 양의 원리라 한다면 평등은 음의 원리이다, 양과 음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존재는 다른 하나의 존재를 전제한다. 상대방의 존재를 통해서만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은 둘로 있음으로써만 함께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 원리이다.¹¹⁾

10) 이종은, 『평등, 자유, 권리』 (서울: 책세상, 2011), 59.

11) 위의 책, 66.

자유와 평등은 정치철학적 전통에서뿐 아니라 개념적 규정에서도 대립적이며 서로를 전제한다. 하지만 자유가 자본주의의 이념으로, 평등이 사회주의의 이념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연결되게 되면서 자유와 평등은 서로 대극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¹²⁾ 그러나 이러한 대극적 성격은 부당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자유를 배제한 평등은 획일화에 불과하며, 동시에 평등이 배제된 자유는 필연적으로 아노미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유가 확장되면 평등이 축소되고 평등이 확장되면 자유가 줄어든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상호대립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이다.

정보사회에서 자유와 평등 사이의 갈등은 정보권의 침해를 통한 정보의 양극화와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있다. 자유가 방종과 아노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평등은 자유의 기준이 되며, 평등이 획일화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자유는 평등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자유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불평등과 불안정의 심화를 막을 수 없고, 역으로 평등은 자유의 제한 위에서만 나타난다. 그 결과 21세기에 들어 자유와 평등의 대립이 그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 자유와 평등 사이의 모순은 정치사상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이고 많은 사상가들이 그 모순을 놓고 씨름했지만 모두가 실패하였지만, 우리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¹³⁾

역사적으로 자유의 가치가 평등보다 우월하게 인정되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자유주의가 지배이데올로기였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양극화와 계급구조는 사회주의적 평등에 대한 요구를 강화시켰다. 한편 자본주의는 평등을 통한 시장의 보안을 추구하기보다 시장기능의 약화로 간주

12) Arsene Vargas, *Social and Political Equality and its Relationships with Freedom* (New York: Independently Published, 2020), 11.

13) 위형윤, “책임사회 속에서 차별에 대한 인권실현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6(2014), 232.

하였다. 사회주의는 자유의 개념을 계급구조 안에서의 소유권 문제로 축소하여 평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학과 정치학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대등한 가치로 설정하고, 그 대극성의 극복을 사회 현실 안에서 극복하려 노력하였다.

정치적 의미에서는 단순하게 자유를 구속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윤리적 차원에서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된다. 소극적 자유란 무엇을 하든 부당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구속의 부재로서의 자유(freedom from)를, 적극적 자유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자유(freedom for)를 의미한다. 적극적 자유는 평등과 접촉점을 형성한다. 한편, 평등은 개념상 구분으로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천부 인권을 논할 때 전제되는 것은 절대적 평등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대적 평등이 요구되거나, 가능한 경우는 나타날 수 없다. 절대적 평등을 완전평등이라고 한다면, 상대적 평등이란 다원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지정한 의미에서 평등이라는 해석이며 자유개념과 상충되지 않는다. 정보권 안에 내재하는 자유와 평등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알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것은 평등에 기초해서 자유를 추구하는 길이며, 사회 윤리적 시각에서는 정보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자율권을 실현하는 것이다.¹⁴⁾ 정보권이 정보사회의 핵심권리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알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가 상호 균형을 이루면서 자기정보통제권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14) 김미영, “인간다움의 재조명을 위한 인간성 회복에 대한 신학적 이해,” 『신학과 실천』 73(2021), 326.

IV. 정보권과 사이버문화

사이버문화는 익명성을 통하여 정보의 다양성이 무한히 증식되는 정보의 문화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가상적 아바타나 아이디를 통해서 감추어져 있으며 이는 만큼 지배하고 알려진 만큼 지배당한다. 한편, 사이버 문화는 네트워크의 문화이며, 그것의 구성 자체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개방성의 문화이다. 개방성과 익명성은 정보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요구한다. 이러한 수평적이고 개방적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출현으로 데이터의 상호 공유라는 민주적 취지는 그대로 보존한 채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기존의 비민주적 성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¹⁵⁾ 정보의 주체요 객체로서 개인은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조정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규범적 규제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통해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이제 정보의 조정과 통제는 오직 네티즌 개인의 자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사이버 공간은 지금까지 인간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가졌던 어떠한 의사소통 수단도 비동시적이고, 쌍방향적인 방식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익명성이 유지되는, 다수 대다수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통신망은 최초로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였다. 더 나아가서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앞으로 시각과 청각, 텍스트와 동영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실화된 가상현실이 구현되는 멀티미디어적 의사소통까지 실현시켜줄 것이다.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는 조타수란 뜻의 그리스어 'kubernetes'에서 온 단어인데, 조정, 통제의 의미를 나타낸다. 사이버문화는 익명성 때

15) 김영환, 『사이버문화와 기독교문화전략』 (서울: 콤팩출판사, 1999), 25.

문에 어떠한 규범도 법도 작용할 수 없으며 네티즌 개인이 정보를 조정하고 통제함을 통하여 유지되는 자율성의 문화이다.¹⁶⁾ 가상공간은 현실세계의 시공적 한계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시켜 놓았다. 이제 는 현실 속의 인간을 넘어서 아바타라는 가상적 인간으로 존재의 양식이 바뀌게 된 것이다.

한편,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은 정보권의 한계를 드러낸다. 전통적인 현실 공간에서는 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한 제도와 규범에 따른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 사이버문화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필수적이지만, 현실공간에서처럼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가시적인 규범적 통제가 불가능하고 단지 사이버 현실에 숨어 있는 익명적인 인간에 대한 규정만이 가능하다. 가상 현실의 개인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정보와 삶을 드러내지 않고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며, 익명성의 불안정한 안전에 적응되기 쉽다.

사이버 문화의 익명성은 사회구성원의 개인주의와 정보권 침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¹⁷⁾ 사회적 관계는 데이터베이스의 영역 안에 저장됨으로써 개인적 단절의 단위로 변경된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모두 익명의 존재가 되어서 이른바 육체성을 결여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인간실존이 연출된 단편인격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 결과로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적 인간 사회의 공동체성이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익명성의 디지털 미디어화가 사회규범이 해체된 집단무의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게 된다.¹⁸⁾

사이버문화는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알려지지

16) William Ashby, *An introduction to cybernetics* (London: Franklin Classics, 2018), 28.

17) 김홍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기독교 사회윤리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3(2000), 184.

18) Trust Genics, *Cybersecurity* (New York: Fortune Publishing, 2019), 33.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보소외계층의 증가와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 급속한 인터넷 혁명은 정보독점에 따른 정보격차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¹⁹⁾ 정보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할 사이버공간에서조차 사회적 조건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은 경제적 양극화보다 더 심각하다. 현실세계의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들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역시 소외되고 있으며, 소득계층, 지역, 성별에 있어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보 불평등은 정보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정보통신기기를 자유롭게 다루는 자와 그러지 못하는 자, 정보를 스스로 창조하는 자와 이에 지배당하는 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얼마 전까지는 정보소외를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고급정보에 대한 수집, 활용의 문제로 귀결된다.²⁰⁾ 인터넷 사이트들이 유료화되면서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고급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정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또한 사회적 지위와 금전규모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특화사이트의 등장은 새로운 정보격차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권 문제는 결국에는 정보 보안이나 정보 관련 법규 제정보다 윤리의식의 정립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율성이 유일한 규범으로 작용하여 조정되고 통제되는 사이버 문화에서는 개인의 정보통제가 권리이며, 책임이 된다. 따라서 정보주체로서 개인이 알 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 사이의 중재와 정보권 보호를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이버 문화를 조정하고 통제해야 하는 윤리적 당위성이 현실문화의 법률적, 제도적 정비와 병행되어야 한다.

19) Sergio Barile, *Cybernetics and systems* (London: Routledge, 2018), 51.

20) 이승진, “뉴 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54(2017), 241.

V. 정보권의 규범적 한계

2018년 3월 22일 공개된 헌법 개정안 전문을 보면,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정보권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알려지지 않을 권리(프라이버시권)는 과거에는 공권력 또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관한 개념으로부터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한 '공적 영역'에까지 확대되었지만, 알 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 사이의 경계 설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²¹⁾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 영역과 공공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정보수집과 활용의 권리는 정보침해로부터의 자유, 정보표현의 자유, 정보, 획득, 접근의 자유와 부딪칠 수 있다. 경제질서 안에서 자본과 시장이 독점화되는 것처럼 정보의 독점도 정보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정보침해로부터의 자유권은 서로를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지지 않을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은 시대와 사회, 기술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문화마다 상대적인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일률적 정의가 어렵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판단과 대안도 일반화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침해가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선명해지며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생겨날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을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조처는 사후적일 수밖에 없으며, 개념과 접근 방법은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

21) 변재욱, 『정보화 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22.

인공지능을 통한 정보기술의 혁신에 따라 프라이버시와 무관한 정보를 가지고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통해 필연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를 남기게 된다. 그러한 개인정보 중에는 프라이버시라는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 있는 반면, 정보주체의 의사표시로 처분이 가능하며 경제적 유용성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있다. 후자의 유형에 속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자의 권리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타인의 이용권한을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만을 근거로 무작정 박탈할 수 없다.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 문화가 공적 영역에 포함된다. 사회, 경제적 영역의 모든 활동은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이 사라져 버렸다. 한편,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대책이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 처리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기존의 산업구조가 맞춤 생산과 맞춤 소비로 전면 개편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보주체에 의한 통제 및 사회에 의한 활용 측면을 조화롭게 고려하기 위해 정보권의 중립적인 개념규정이 불가피하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형식적인 프라이버시권의 실현에만 치중한 나머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앞서 일률적인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사전 동의 절차를 배제한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곧바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불가침의 성격을 존중해야 하는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를 보호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만, 개인정보 가운데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처분 대상이 되며 경제적 유용성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 즉 재산권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보호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이다.²²⁾

더 나아가서 사전 동의 제도는 본인의 의사나 이해와 무관한 강제적인 동의를 야기시키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강요되는 동의절차에 무감각해 지도록 한다. 그 결과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침해한 사람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합법적 근거로 정당화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있어서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된 것과 그 외의 부수적 정보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여, 정보권 침해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규범들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사전 동의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의 준수보다는 개인정보 제공 당시의 전후 상황 또는 정보주체의 합리적인 기대 범위 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실질적이며 사후적인 규제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단편적인 일반법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한 규제를 집행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야별 개별법을 중심으로 해당 산업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³⁾

201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레귤레이션(안) 제17조는 ‘잊혀질 권리와 삭제의 권리(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를 명시했다. 레귤레이션(안)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모두 여섯 번 등장하는데, 제17조에서 그 의미와 법령의 취지를 자세히 규정한다.²⁴⁾ 나머지 다섯 번은 제17조에서 규정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지칭하는 포괄적 표현

22) 신종철,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서울: 진한 엠앤비, 2020), 15.

23) 변재욱, 『정보화사회..자유』

24) 위의 책, 33.

으로 쓰고 있다. 즉, 잊혀질 권리라는 상징적 표현이 레굴레이션(안)에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삭제권으로 명료해진 것이다. 그래서 잊혀질 권리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삭제할 권리(Right to Delete)’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레굴레이션(안)도 잊혀질 권리를 삭제할 권리의 확장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⁵⁾ 레굴레이션(안) 제17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정보처리자에 대해 더 이상 보유가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권리(잊혀질 권리), 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문제되는 개인정보 삭제를 촉구하도록 노력할 의무의 측면으로 삭제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²⁶⁾

VI. 정보보호와 정보 윤리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정보주체가 의도하지 않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 또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한편 정보의 가용성과 보안측면에서 보면 정보보호란 “정보의 활용과 정보의 통제 사이의 균형감각을 갖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²⁷⁾ 다시 말해서 그것은 사용 가능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정보사회가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권 침해에 대한 법적인 통제에 앞서서 윤리의식의 고양에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만큼 지배하고 알려진 만큼 지배당하는 사이버 현실 속에서 개인의 자율적 책임의식만

25) 위의 책 34.

26) 위의 책, 35.

27) 김종필, 『정보보호 핵심지식』 (서울: 정일, 2002), 33.

이 유일한 규범이 될 수 있다.²⁸⁾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알 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의 대립을 서로를 배려하는 황금률의 정보정의로 통합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과 바이러스, 스팸메일과 음란사이트, 소프트웨어 불법복사 등의 문제는 법적인 규제²⁹⁾ 이전에 각자의 윤리적 통제가 필요한 영역이다.

최근에 진행되어오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변화는 인터넷과 이동통신 서비스의 보급에 기인하며, 이 둘은 광통신에 기반을 둔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으로 통합되어 오프라인을 능가하는 전자 상거래를 통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기기를 통한 정보 공유 방식은 현대인의 생활과 업무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사물 인터넷 기술이 생활 및 업무 공간 곳곳에 적용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생활은 편리해지고 있다. 빅데이터 수집의 편리성과 데이터 처리 및 분석기술이 발달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시장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핀테크 기술은 생활의 편리함과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폭을 넓혀주고 있다. 한편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발달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확대화 스마트폰 등의 휴대 가능한 통신기기의 편리성 때문에 전통적 업무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사무실 같은 동일 장소에 모여 수행하던 업무의 개념을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보보호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해킹과

28) 문시영, “정보통신 윤리교육, 기독교 사회윤리적 성찰의 과제,” 『기독교 사회윤리』 10(2005), 78.

29) 조휘갑, 『정보보호 관리 및 정책』 (서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2), 23.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령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보의 비밀성과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비밀성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며 무결성은 정보와 정보처리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가용성은 허가된 주체에게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사물 간의 통신이 생활에 깊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수집된 빅데이터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도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클라우드나 서버 같은 곳에 저장된 정보나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전송 중인 정보에 대한 다양한 위협이 부정적인 면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환경을 피할 수 없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에 대한 위협과 방어기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정보보호는 실천적 의미에서 정보의 생성, 처리, 저장, 전송, 출력 등 정보 순환의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책임추적성, 인증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수단과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밀성은 비인가된 개인, 단체, 프로세스 등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접근통제의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기밀성 보호를 위한 것이다. 무결성은 정보의 저장과 전달 시 비인가된 방식으로 정보와 소프트웨어가 변경 파괴되지 않도록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취급하는 장치에는 무결성을 점검하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정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외부침입을 막기 위하여 무결성 보장은 필수적인 것이다. 가용성은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나 서비스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가된 사용자에게는 정보 자산에 대한 접근이 지연, 방해되어서는 안 되며 즉시, 또는 적시에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가용성의 결여는 중요한 임무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복구비용 등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다. 책임추적성은 각 개체의 행위를 유일하게 추적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으며 추적 불가능한 행위를 방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인증성은 어떤 주체나 객체

가 틀림없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은 의도된 행위에 따른 결과의 일관성을 말한다. 신뢰성의 결여는 고객신뢰 상실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는 등 조직의 목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보호에 대한 논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이다. OECD에서 이미 1978년대부터 시작하여 1980년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라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또한 지침은 공적·사적 부문에서의 특정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원칙들은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내용의 정확성, 목적 명확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보호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 책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³⁰⁾

VII. 나가는 말

1970년대 초부터 유엔을 통하여 제3세대 인권이라는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내용은 가난과 부 전쟁과 위기, 환경파괴의 위협을 통한 국제적 사회, 경제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그 안에는 발전권, 적합한 환경 속에 살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인류공동유산의 공유권, 정보교환의 권리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정보권 침해의 상황에 법적, 제도적 기준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알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의 침해를 통한 정보의 양극화는 자본의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며 심화시킨다. 정보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정보인권이 수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권 확립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이론적 한계가 본 연구를

30) 홍만표, 『U컴퓨팅 보안과 프라이버시』 (서울: 진한엠엔비, 2009), 33.

통하여 제시되고 현실적 대안의 가능성이 모색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정보권의 자기정보통제권으로의 확장과 심화를 위한 이론적 기초가 제공되었다. 알 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의 대립적 성격 때문에 현실적으로 윤리적 대안과 입법화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회 윤리적 기초 위에서 정보권 확립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보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개선을 통한 정보권 침해에 대한 예방적 노력이 시급하다. 정보권 연구와 입법화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적 연구와 교류를 필요로 하는 통합적 작업이기 때문에 후속적인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정보권의 문제는 인터넷 통신망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통해서 정보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요구한다. 개인은 정보의 생산자임과 동시에 소비자이며 자기 정보의 관리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가시적인 규범적 통제가 불가능하고 단지 그 공간에 등장하는 익명적인 존재에 대한 기술적인 통제만 가능하다. 사이버 문화의 익명성은 사회 구성원의 정보권 침해를 심화시키고 사회의 공동체성과 사회규범을 해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규제에 앞서서 정보주체로서 개인의 자율적 윤리의식이 권리의 한계를 보완한다. 정보권 안에서 알 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 사이의 갈등은 윤리적 차원에서 자기정보 통제권으로 해소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정보권 남용과 침해는 성 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는 연구자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 인문학 연구원에 개설되어 있는 자격증 과정인 성 심리 전문가 과정과 성 갈등 조정관 과정과 인권교육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교육과 현장에 적용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인권사상에 대한 후속적 연구를 통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윤리를 위한 이론적 방향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인문학

연구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자격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본권.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서울: 풀빛, 2016.
- 권혜령.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0.
- 김미영. “인간다움의 재조명을 위한 인간성 회복에 대한 신학적 이해.” 『신학과 실천』 73(2021), 307-337.
- 김비환. 『인권의 정치사상: 현대 인권 담론의 쟁점과 전망』. 서울: 이학사, 2016.
- 김영한. 『사이버문화와 기독교문화전략』. 서울: 쿰란출판사, 1999.
- 김정수. 『현대사회와 권리실현의 문제』.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9.
- 김종필. 『정보보호 핵심지식』. 서울: 정일, 2002.
- 김종현. 『정보보호 법제도와 보안정책』. 서울: 도서출판 흥릉, 2017.
- 김홍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기독교 사회윤리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3(2000), 169-196.
- 김훈기.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서울: 동아시아, 2013.
- 문시영. “정보통신 윤리교육, 기독교 사회윤리적 성찰의 과제.” 『기독교 사회윤리』 10(2005), 59-81.
- 변재욱. 『정보화 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서울: 진한 엠앤비, 2020.
- 안상운.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서울: 살림, 2013.
- 위형윤. “책임사회 속에서 차별에 대한 인권실현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6(2014), 207-242.
- 이관기.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서울: 한국교육문화원, 1993.
- 이봉철. 『현대 인권사상』. 서울: 아카넷, 2001.
- 이병남. 『미디어시민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이승진. “뉴 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54(2017), 227-264.
- 이재진. 『미디어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이종은. 『평등, 자유, 권리』. 서울: 책세상, 2011.

- 조남기. 『역사와 인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 조희갑. 『정보보호 관리 및 정책』. 서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2.
- 홍만표. 『U컴퓨팅 보안과 프라이버시』. 서울: 진한엠엔비, 2009.
- Albrecht, Florian.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recht*, Stuttgart: Kohlhammer Verlag, 2018.
- Ashby, William. *An introduction to cybernetics*, London: Franklin Classics, 2018.
- Barile, Sergio. *Cybernetics and systems*, (London: Routledge, 2018).
- Buchmann, Johannes. *Internet privacy: Eine multidisziplinäre Bestandsaufnahme*, Berlin: Springer Vieweg, 2012.
- Decker, Michael. *Robo- and informationethics. some fundamentals hermeneutics and anthropology*, Wien: Lit Verlag, 2012.
- Fastenrath, Ulrich. *Menschenrechte: Ihr internationaler Schutz, Menschenrechte: Ihr internationaler Schutz*, Berlin: Beck-Texte im dtv, 2018.
- Floridi, Luciano. *The ethics of information*, Oxford: OUP Oxford, 2013.
- Freeman, Lee. *Information ethics priv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New York: Science Publishing, 2011.
- Fromm, Erich. *Man for himself*, (London: Routhledge, 2003).
- Genics, Trust. *Cybersecurity*, (New York: Fortune Publishing, 2019).
- Heesen, Jessica. *Handbuch Medien- und Informationsethik*, Stuttgart: J. B. Metzler, 2016.
- Ochs, Carsten. *Die Zukunft der Datenökonomie: Zwischen Geschäftsmodell, Kollektivgut und Verbraucherschutz*, Berlin: Springer VS, 2019.
- Pollmann, Arnd. *Menschenrechte: Ein interdisziplinäres Handbuch*, Karlsruhe: J. B. Metzler, 2012.
- Spinner, Helmut. *Bausteine zu einer neuen Informationsethik*, Berlin: Philo Verlag, 2001.
- Susi, Mart. *Human rights, digital society and the law*, Routledge: A Research Companion Verlag, 2019.
- Vargas, Arsene. *Social and political equality and its relationships with freedom*, New York: Independently Published, 2020.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03일

심사개시일: 2021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3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정보권 안에 내재하는 자유와 평등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윤리적으로 성찰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알 권리를 주장한다. 이것은 평등에 기초해서 자유를 추구하는 길이며, 정보를 통제하는 자율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정보권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알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가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정보권은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통합되어야 한다. 사이버문화는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권 문제는 법의 제정보다 윤리의식의 정립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율성이 유일한 규범으로 작용하는 사이버 문화에서는 개인의 정보통제가 권리이며, 책임이 된다. 정보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정보권 침해에 대한 법적인 통제에 앞서서 윤리의식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이버 현실 안에서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주체가 되고 정보가 없는 사람은 객체가 된다. 따라서 그 현실 속에서는 개인의 자율적 책임의식이 유일한 규범이 될 수 있다. 정보권이 자기정보 통제권으로 확대될 때, 정보의 권리와 정보의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주제어: 정보권, 알권리, 알려지지 않을 권리, 자유, 평등
